

건설근로자공제회,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 실시

- 출산 가정에 최대 50만원 상당의 지원금 및 출산 축하 꾸러미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에 자녀를 출산한 건설노동자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퇴직공제 적립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더 많은 건설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정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각 지방정부 출산지원사업과 달리 현장 이동과 거주지 변경이 잦은 건설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규모는 자녀 수에 따라 첫째 자녀 출산 시 지원금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지원금 30만 원과 출산 축하 꾸러미(둘째 10만 원 상당, 셋째 이상 20만 원 상당)를 지원한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건설e음(모바일, PC)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물론, 방문·이메일·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청구 중인 경우,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이미 공제회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건설노동자 가정의 새가족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건설노동자분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안내문

담당 부서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책임자	부 장	장성호 02-519-2090
		담당자	주 임	김가람 02-519-2093



붙임

2026년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안내문

2026년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국내 저출산 상황을 감안하여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출산 장려 및 양육 부담 완화 등 복지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2026년에 자녀를 출산('26.1.1 이후 출생)한 건설노동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자 ②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또는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 - 단, 여성노동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최근 24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자 가능 ③ 출산일 기준 피공제자로 등록된 건설노동자(피공제자번호 기준) < 제 한 사 항 > •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신청불가 • 동일 자녀에 대해 공제회 출산지원금 기수령자 • 건설근로자 부부 모두가 신청자격 충족 시, 1인만 청구 가능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지원내용	<table><tr><th>구분</th><th>첫째</th><th>둘째</th><th>셋째 이상</th></tr><tr><td>총 지원액</td><td>30만원</td><td>40만원</td><td>50만원</td></tr><tr><td>지원금액</td><td>30만원</td><td>30만원</td><td>30만원</td></tr><tr><td>부가지원</td><td>-</td><td>10만원 상당 (출산 축하 꾸러미)</td><td>20만원 상당 (출산 축하 꾸러미)</td></tr></table>	구분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총 지원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지원금액	30만원	30만원	30만원	부가지원	-	10만원 상당 (출산 축하 꾸러미)	20만원 상당 (출산 축하 꾸러미)
구분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총 지원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지원금액	30만원	30만원	30만원														
부가지원	-	10만원 상당 (출산 축하 꾸러미)	20만원 상당 (출산 축하 꾸러미)														

2.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필요서류
건설e음 (모바일 또는 PC)	· 가족관계증명서
지사/센터 방문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우편(등기), 팩스 등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신청인(피공제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및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

3. 문의 : ☎ 1666-1122 (공제회 고객센터)